

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10. 19.
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10. 1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1. 10. 6.

다. 상정일자: 2021. 10. 15.

(제262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기획재정국장

나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·체계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(안 제4조, 제5조까지)

다. 공모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, 교부 결정 취소(안 제6조, 제7조)

라.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(안 제10조)

마.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(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1. 8. 19. ~ 9. 8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가. 제안취지 검토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임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| |
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보조대상 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에 대하여 기술○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|
|---|

- 공모에 의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,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, 중요재산 보고·공시 등과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

○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

-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, 위원장 직무, 위원회 운영과 회의, 분과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정

○ 안 제22조는 보조금 교부현황, 성과평가 결과 등 중요 내역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토록 규정함

-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및 운용 전반적인 관리 법령인 「지방재정법」이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·결산·보조금·채권관리 등 지나치게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분야가 다양하고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할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
-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·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·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2021.7.13. 시행되고 있으며, 행정안전부에서 「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표준안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함
- 안 제2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, 예산 계상신청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

- 안 제6조부터에서 제7조까지는 공모방식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, 교부결정 취소 등의 대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
- 안 제10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
-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기존 포괄적인 자격조건을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함

다. 종합검토 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 및 조례 표준안이 배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 법률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투명하고 엄격한 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됨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